

서울특별시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

1. 제 안 경 위

- 가. 발 의 자: 이광성 의원
- 나. 의안번호: 제2150호
- 다. 발의일자: 2021. 2. 5.
- 라. 회부일자: 2021. 2. 9.

2. 제 안 사 유

- 시장이 폐기물배출자, 재활용사업자 등의 단체와 자발적으로 협약을 맺어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자원의 재활용을 촉진하고자 함.

3. 주 요 내 용

- 가. 시장이 폐기물 관련 단체 등과 자발적 협약을 맺을 수 있도록 규정함
(안 제4조의6 신설).

4. 참 고 사 항

- 가. 관계법령: 「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」
- 나. 예산조치: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참조
- 다. 기 타: 신·구조문 대비표

5. 검토 의견

가. 개요

-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자원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장이 폐기물배출자·재활용사업자·제조자등 또는 이들로 구성된 단체와 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.

나. 검토의견

- 「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34조의8(자발적 협약의 체결)에 따르면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폐기물배출자·재활용사업자·제조자 등 또는 이들로 구성된 단체와 자발적 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, 이 협약의 목표, 이행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해서는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.

〈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4조의8〉

법 제34조의8(자발적 협약의 체결)

- ① 환경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폐기물배출자·재활용사업자·제조자등 또는 이들로 구성된 단체와 협약(이하 "자발적 협약")이라 한다)을 체결할 수 있다.
- ② 자발적 협약의 목표·이행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이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- ③ 환경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자에게는 그 자발적 협약의 이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
- 「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25조의2(자발적 협약의 이행방법)에서는 자발적 협약 체결 시 고려사항을 규정하고 있음.

〈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의2〉

법 시행규칙 제25조의2(자발적 협약의 이행방법 등)

-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34조의8에 따른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.
 - 1. 연도별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재활용 현황
 - 2. 폐기물의 발생 억제와 재활용을 위한 목표 및 이행기간
 - 3.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재활용목표 이행을 위한 투자계획
 - 4. 그 밖에 자발적 협약의 목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-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34조의8에 따라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자에게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재활용 목표 달성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이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, 자발적 협약에서 정한 사항의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.

-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폐기물 관련 개인이나 단체와 자발적 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, 협약 체결 시 고려 사항과 이행에 필요한 지원 및 이행 여부 확인 등을 명시하여 자발적 협약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임.

이는 상위법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고 있는 사안이며, 필요한 사항에 대해 조례로 정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므로, 조례 개정 취지 및 내용에 대해 별다른 의견은 없음.